

충청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·운영 민간위탁
동의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수석전문위원 김호식

충청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·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8년 11월 26일
- 회부일자 : 2018년 11월 27일

3. 제안이유

- 매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선정함에 따라 신규사업 발굴, 선정사업의 관리 등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충청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가 필요한 실정임.
- 충청북도는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5조에 따라 충청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·운영의 민간위탁안에 대하여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.

4. 주요내용

- 위탁기간 : 위·수탁 협약일로부터 3년(2019. 3. ~ 2022. 3. 예정)
- 위 치 : 충청북도 내
- 공간규모 : 센터운영 가능면적(센터장 1, 직원 3명)
- 위 탁 비 : 2.5억원 정도(2019년, 인건비 1.6, 운영비 등 0.9)
- 수탁기관 : 도시재생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

○ 위탁사무

- 지역맞춤형 도시재생 시책 및 신규사업 발굴
- 사업 선정 및 관리(모니터링 등) 지원
-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지원
- 전문가 육성(도시재생대학 운영) 및 파견
- 주민참여형 교육프로그램 개발, 지원
- 도시재생 홍보 및 소식지 발간
- 시·군 센터와 네트워크 구축, 미설치 시·군의 기반강화 지원

5. 검토의견

- 이 동의안은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11조 및 「충청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근거하여 충청북도에 광역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하고,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5조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민간위탁하기 위해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.
- 도시재생(urban regeneration)은 인구 감소, 산업구조 변화,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, 주거환경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 역량 강화, 새로운 기능 도입·창출 및 지역자원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·사회적·물리적·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임(도시재생법 제2조제1항제1호)
- 과거 개발이익 위주의 대규모 정비사업으로 인해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자 그에 대한 반성으로 도시재생이 부각됐으며, 도시재생은 정비사업에서 제외되었던 주민참여와 행정기관, 민간, 시민단체, 주민 등 다양한 주체의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함.
-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정부와 주민 사이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고 추진하는 조직으로 지역 내 다양한 주민, 기업, 시민단체,

전문가, 행정 등 도시재생사업주체 간 파트너십을 구축하고, 지역리더 발굴·육성과 지역자원의 활용 등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거나 추진하는 조직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1개 시도에서 설치를 하였음.

-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방식으로는 행정직영(충주, 제천) 방식과 민간위탁운영(청주) 방식으로 나눌 수 있음. 행정직영은 사업추진의 효율성이 높지만,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의 유연성이 부족한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며 민간위탁은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기관이 운영을 맡음으로서 주민과의 거리감을 좁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예산확보나 사업추진 효율성이 낮은 것이 단점임.
-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은 단순히 노후 주거지역 환경정비에 국한되지 않고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경제 육성 등을 포함하여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는 것이 주요 내용임.¹⁾
- 따라서 주민의 의견수렴이 용이한 민간이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, 광역센터와 기초센터 간 역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.

붙 임: 충청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·운영 민간위탁 동의안. 끝.

1) 국토교통부가 2014년 6월 발표한 “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가이드라인”

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】

주 요 역 할	세 부 내 용
1.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조직구성 및 역할 규정 - 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의 공간적 범위 설정(도시재생활성화지역+주변지역)
2.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참여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공동체 현황조사 -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공동체 리더발굴 및 육성 등 인적 자원 육성·관리
3.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관리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·변경 지원 -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 -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필요한 도시재생사업 공모지원 -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을 위한 신규 주민조직 구축·지원
4.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지원 - 도시재생사업의 관리·모니터링: 비용지원 및 사업현황 검토
5. 지역사회 홍보 및 교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재생사업 홍보, 참여유도 - 재생사업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관련 주민교육 등
6. 마을기업 창업 및 운영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마을기업 창업을 위한 주민 교육 및 의견수렴, 주민참여 유도 - 마을기업 창업 및 운영 지원

※ “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가이드라인” (국토교통부 2014년 6월 발표)